# 초 경 량 비 행 장 치 신 고 업 무 운 영 세 칙

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

# 목 차

제.	1장 취	통칙	· 1
7	제1조	목적	1
7	제2조	정의	1
7	제3조	다른 법령과의 관계	1
제2	2장 출	촌경량비행장치 신고 ······	2
저	]1절	초경량비행장치 신고	2
7	제4조	신규신고	2
7	제4조	의2 신고대상	2
7	제5조	변경신고	3
7	제6조	이전신고	3
7	제7조	말소신고	.3
7	제8조	신고접수 창구	4
7	제9조	신고수리	4
7	제103	- 신고증명서의 번호	4
7	제113	- 신고번호의 부여방법	4
7	제12조	-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	4
7	제13조	: 신고증명서의 폐기 및 재교부·····	5
저	2절	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	5
7	제143	- 신고대장	5
7	제15조	· 신고대장의 관리 ·····	5
H.	*1		. 5

##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

2020.12.10. 제정 (규정 제1302호) 2021.12.31. 개정 (규정 제1362호) 2023.09.04. 개정 (규정 제1441호) 2025.04.21. 개정 (규정 제1506호)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「항공안전법」제122조, 제123조 및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한 절차·방법·신고대장 관리 등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신고"란 「항공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2조, 제123조 및 「항공안전법 시행 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301부터 제303까지에 따른 신규신고, 변경신고, 이전 신고, 말소신고를 말한다.
- 2. "신규신고"란 법 제122조 및 시행규칙 제3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(이하 "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"이라 한다)가 최초로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.
- 3. "변경신고"란 법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,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,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 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.
- 4. "이전신고"란 법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 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.
- 5. "말소신고"란 법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6. "초경량비행장치 보관처"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초경량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.
- 7. "신고담당자"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31>

##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

## 제1절 초경량비행장치 신고

- 제4조(신규신고)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 (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)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1. 초경량비햇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2.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
- 3. 가로 15센티미터.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(다만,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.) <개정 2021.12.31>
- ②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소유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소유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소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체 제작번호 촬영 사진제출시 기체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와 영문 또는 국문 등을 조합하여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자체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체 제작번호가 중복될 경우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제작번호를 재부여하도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1>
- 제4조의2(신고대상) ①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이사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
- 1.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른 항공기대여업·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
- 2.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는 비행장치
- 3.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
- 4.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
- 5.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를 초과하고, 길이가 7미터로 초과하는 것

- ② 법 제131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
- 1. 군용·경찰용·세관용 무인비행장치
- 2. 연구기관 등이 시험·조사·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
- 3.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
- 4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

[전문개정 2021.12.31]

- 제5조(변경신고)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, 소유자등의 성명·명 칭, 주소,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,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 량비행장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이전신고)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 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그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말소신고)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
  - 2.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
  - 3.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
  - 4.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
- 5. 신고대상 기체의 개조 등으로 인하여 신고 된 기체의 신고번호 최대이륙중량 구간 (C0~C4)을 벗어난 경우 <개정 2021.12.31.>
-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(催告)하여야 한다. 다만, 최고(催告) 대상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 할 것을 공단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③ 제2항에 따른 최고(催告)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,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
- 제8조(신고접수 창구)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규·변경·이전·말소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시스템 또는 e-mail·팩스·우편·방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제9조(신고수리) ① 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신규·변경·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,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신고서류의 기재 내용에 조롱·비난·욕설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또는 신고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은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③ 이사장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- ④ 제7조에 따른 말소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,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신고증명서의 번호)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(이하 "신고증명서"라 한다)의 번호는 해당 연도 다음에 영문 알파벳(무인비행장치 U,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M) 및 접수번호(예:2020-U000001, 2020-M000001)를 연속하여 표기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제11조(신고번호의 부여방법) ①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 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신고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1의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한다. 다만,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하고 말소신고 된 번호는 재 사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21.12.31>
- ③ 제2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)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번호를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, 기구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신고번호를 강철 등 내화금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9.04>
- 1.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: 주(主)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또는 출입구가 없는 경 우 엔진 장착 프레임 등
- 2. 동력패러글라이더: 엔진 장착 프레임 등

- 3. 기구류: 바스켓 내부 측면 또는 기낭
- ③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.
- ④ 신고번호의 표시위치는 별표2의 신고번호의 표시위치(예시)와 같다.
- ⑤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3의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와 같다.
-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9.04>
- 제13조(신고증명서의 폐기 및 재교부)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변경신고 또는 이전 신고를 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거나 말소신고를 한 경우 기존 신고증명서를 폐기하 여야 한다.
-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21.12.31>

## 제2절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

- 제14조(신고대장) ①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01조에 의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(이하 "신고대장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- ② 이사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에 따른 신규·변경·이전·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, 신고대장에 신고자 성명·명칭, 주소, 신고원인, 신고연월일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.
- ③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는 삭제 <2025.4.21.>]

- **제15조(신고대장의 관리)**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신고대장 : 말소 신고한 날부터 10년
- 2. 신고서 및 부속서류 :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

[제16조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<2025.4.21.>]

**부 칙** <규정 제1302호, 2020.12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62호, 2021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41호.. 2023.9.4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여 신고번호가 발급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적용한다.

부 칙 <규정 제1506호., 2025.4.21.>

이 세칙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표1] (제11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5.04.21.>

#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

#### <초경량비행장치-무인비행장치>

- 1. 신고번호는 전체 11자리로 구성한다.
- 2. 신고번호 구성 순서는 최대이륙중량 분류부호 2자리, 영리여부 분류부호 1자리, 장치종류 분류부호 1자리, 장치 종류별 일련번호 7자리를 차례대로 연결한다.
- 3. 신고번호 표기부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<신고번호 표기부호>

	구분	부호		구분	부호	
	최대이륙중량	C0	영리	영리	C ( <b>C</b> ommercial)	
	250g 이하		여부	비영리	N ( <b>N</b> onprofit)	
	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kg이하	C1	- 장치 종류 -	무인비행기	P (Unmanned airPlane)	
최대 이륙중량	최대이륙중량 2kg초과 7kg 이하	C2			무인헬리콥터	H (Unmanned <b>H</b> elicopter)
	최대이륙중량 7kg초과 25kg 이하	C3		무인멀티콥터	M (Unmanned <b>M</b> ulticopter)	
				무인비행선	S (Unmanned air <b>S</b> hip)	
	최대이륙중량 25kg초과	C4		무인수직이착륙기	V (Unmanned VTOL)	

\* VTOL: Vertical Take-off and Landing

## <초경량비행장치-기타>

- 1. 장치종류별 신고번호 앞에 SA~SZ까지 순차적으로 부여
- 2. 장치종류별 신고번호는 다음과 같다.

장	치종류	신고번호
동력비행장치	체중이동형	SA1001 - SZ1999
등릭미행경시 	조종형	SA2001 - SZ2999
회전익비행장치	초경량자이로플레인	SA3001 - SZ3999
외신력미행성지 	초경량헬리콥터	SA6001 - SZ6999
동력패러글라이더		SA4001 - SZ4999
;	기구류	SA5001 - SZ5999
패러글라이더, 낙하산, 행글라이더		SA9001 - SZ9999

#### 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표2] (제12조제4항 관련) <개정 2023.09.04., 2025.04.2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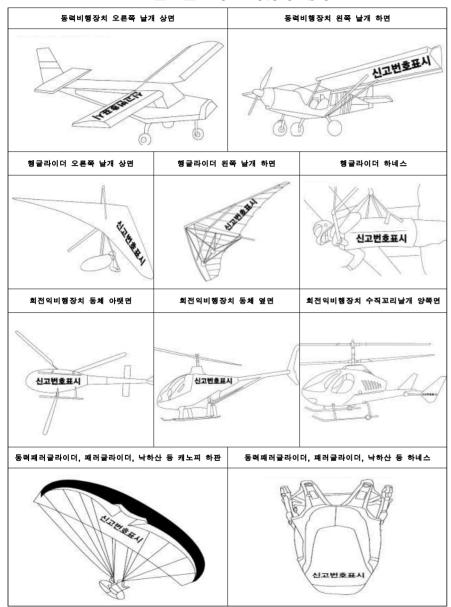
# 신고번호의 표시위치

		구 분	표 시 위 치	비고			
동력비행장치 - 체중이동형 - 조종형			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,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* 다만,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	<ol> <li>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 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/ol>			
행글라이더			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,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·하네스에 표시	2. 신고번호를 날개에 표 시하는 경우에는 신고 번호의기로부분이 비행장			
회전익비행장치 -초경량자이로플레인 -초경량헬리콥터		∪ 이로플레인 빌리콥터	동체 아랫면, 동체 옆면 또는 수직 꼬리날개 양쪽면	지의 진행방향을 향하 제 표시하여야 한다.			
동력패러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낙하산		,	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하네스에 표시	3. 신고번호를 동체 등			
		구형	선체(Balloon 등)의 최대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곳의 양쪽면	에 표시하는 경우에 는 신고번호의 가로 부분이 지상과 수평하			
기구	7류	비구형	리깅 밴드 또는 바스켓 서스펜션 케이 블의 부착 지점 바로 위 선체(Balloon 등)의 최대 단면 근처 양쪽면	기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전익비행장치 의 동체 아랫면에			
	무	무인비행기	·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,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 터 같은 거리 ·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* 다만,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	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 의 최대횡단면 부근에,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 시한다.			
무	인 동 력	무인헬리콥터	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	   4. 기구류의 신고번호는			
인 비 행 장	비 행 장	무인멀티콥터	·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프레임 암 * 다만, 동체가 있는 형태인 경우 동체에 부착	축면과 지상에서 모 두 볼 수 있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.			
치	치	무인수직이착륙기	<ul> <li>무인비행기의 표시위치를 준용한다.</li> <li>다만, 무인수직이착륙기의 형태가 무인 비행기 형태가 아닌 경우, 무인동력비 행장치 중 유시한 종류의 표시 위치를 따른다.</li> </ul>	5. 신고번호의 표시위치 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과			
		무인비행선	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	협의한다.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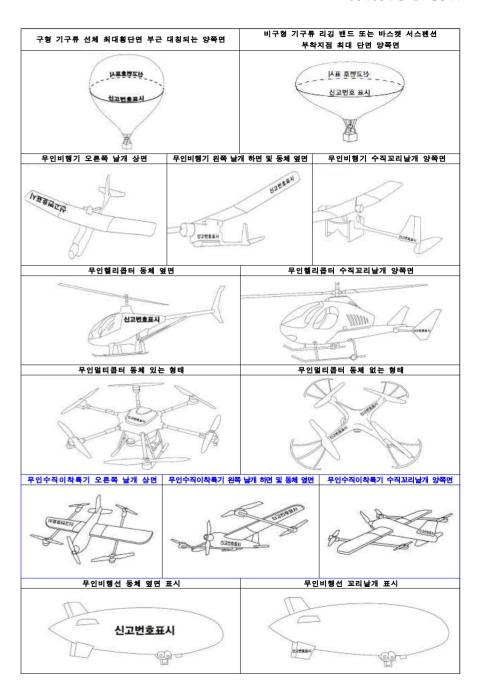
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척

#### 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표2의2] (제12조제4항 관련) <개정 2023.09.04., 2025.04.21.>

# 신고번호의 표시위치 예시



9



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표3] (제12조제5항 관련) <개정 2023.09.04.>

#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

	구	분	ਜ	격	비	고
	가로	세로비	2:3	의 비율	아라비아ź	는자 1은 제외
세	주 날개이	세 표시하는 경우	20cn	n 이상		
로 길 이	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		15cn	n 이상	이랫면에 표/	행장치의 동체 시하는 경우에는 n 이상
	기구류 및 무인비행선의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		50cm	이상	기구류,	무인비행선
	선의	의 굵기	세로길	이의 1/6		
	간	격		의 1/4이상 이하		

\*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, 배터리, 프로펠러, 착륙장치,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 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 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1호서식] (제4조제1항 관련)

## [ ]신 규 초경량비행장치 [ ]변경·이전 신고서 [ ]말 소

※ 색상이 어두	F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히	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	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[	다.		
접수번호		접수 일시		처리기간 7일		
	종류		신고번호			
	형식		용도	[ ] 영리 [ ] 비영리		
	제작자		제작번호			
비행장치	보관처		제작연월일			
	자체중량		최대이륙중량			
	카메라 등 탑재여부*					
	성명 • 명칭					
소유자	주소					
	생년월일		전화번호			
 변경 <b>·</b>	변경	•이전 전	변	경·이전 후		
이전 사항						
말소 사유						
	건법」제122조제1항 • 제 법 시행규칙	네123조제1항·제2항	- [ ]제301조제1항 [ ]제302조제2항 - [ ]제303조제1항	]에 따라		
초경	량비행장치의	[ ]신규 [ ]변경이전을 [ ]말소	율(를) 신고합니다.			
				년 월 일		
		신고인		(서명 또는 인)		
한국교통	안전공단 이사장	귀하				
	1. 초경량비행장치를	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	리가 있음을 증명하는	서류		
첨부서류	<ol> <li>초경량비행장치의</li> <li>가로 15cm × 세로 제작번호 전체를 쵤</li> </ol>	제원 및 성능표 10cm의 초경량 비행장치 측민 밝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.)	면사진(다만, 무인비행정	수수료 상치의 경우, 기체 없음 없음		
	- 이전·변경 시에는	: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[	반 세줄하며, 말소 시에	는 세외합니다.		
		0.01.11=1				

#### 유의사항

신청서 \* 표시 항목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(카메라 등 탑재) 여부를 기입합니다.

I	처리절차									
Ī	신고서 작성	<b>→</b>	접 수	<b>→</b>	검토	→	접수처리	<b>→</b>	통보	
	신고인	,	한국교통안전공단 (신고 담당부서)		한국교통안전공단 (신고 담당부서)	,	한국교통안전공단 (신고 담당부서)	,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2호서식] (제4조제2항 관련)

"이 문서는 전산망에 의한 문서입니다."

## 초경량비행장치 소유확인서

- ◇ 본 서류는 개인 간 중고 직거래, 구매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, 공식적으로 **기체 및 소유자 정보 일치여** 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,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 제출받는 서류입니다.
-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계약서, 견적서(입금내역 포함), 인터넷 구매내역 확인 등으로 기체 및 소유자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확인서가 아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
### □ 비행장치 및 소유자 정보

형식(모델명)	소유자	
제작번호(시리얼번호)	구입(제작일자)	

## □ 소유확인 근거 및 증빙자료 제출

주 의	1. 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 2. 소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가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, 신고 처리가 반려(보완요구) 될 수 있습니다.
내용	1. 소유확인서 제출사유 기재
기 재	2. 해당기체 구입일자(연도), 구입(보유) 경로, 판매자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

20 . . 현재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※ 해당 소유 확인서는 기체신고 민원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.※ 허위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작성자(신청인)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일자 : 소유자와의 관계 : 신청인 성명 : 신청인 연락처 :

서 명 생 략

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3호서식] (제10조 관련)

제 호

대 한 민 국 국 토 교 통 부

#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

- 1. 신고번호:
- 2. 종류 및 형 식:
- 3. 제작자 및 제작번호:
- 4. 용 도: [ ] 비영리 [ ] 영 리
- 5.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:
- 6.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주소:

「항공안전법」제1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1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선 철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4호서식] (제13조제2항 관련)

#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	<u> </u>	접수 일시	처리기간 7일	
비 행 창 치	종 류		신고번호	
	제 작 자			
	제 작 번 호		제작년월일	
	보 관 처			
	성 명(명 칭)			
소 유 자	주 소			
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	전화번호	

재 교 부 신청 사유

상기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.

년 월

신청인 주소

성명·명칭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5호서식] (제15조제1항 관련)

#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

신고번호 및 접수번호 신고연월일 종류 및 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및 소유자 제작연월일 용도 보관처 최고속도 엔진형식 순항속도 자체중량 주 실속속도 최대이륙중량 제 원 길이×폭×높이 연료중량 카메라 등 탑승인원 탑재여부

사 진:

(뒤 쪽)